

제14호(2016. 6. 28.)

對미국·對ASEAN 농산물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실태

이상현 정대희 안수정



1. 농산물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 제고의 필요성 1
2. 한국산 농산물 수입업체의 FTA 특혜관세 활용실태 조사 3
3. 시사점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한석호 연구위원	061-820-2279	shohan@krei.re.kr
내용 문의	이상현 부연구위원	061-820-2037	shlee@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개 요

-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농산물 교역 규모와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면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하여 농산물 수출 증대를 제고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낮은 실정이며,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의 FTA 활용률이나, 국내 농산물 수입의 FTA 활용률과는 불균형이 큰 상황임.
- 미국과 ASEAN 현지 설문조사 결과, FTA 발효 이후 현지시장에서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구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현지 수입업체들은 FTA 발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조사지역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한 경험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의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수입업체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 ASEAN의 경우에는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수입업체의 비중이 40% 이상이었으며, 신청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일부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신청한 경우도 많았음.
- 현지 수입업체들이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산지 증명서나 증빙서류를 받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 수출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나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거나,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ASEAN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세관의 통관 지연이나 기타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해외 현지시장 조사 결과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애로사항을 보완하고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여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대내적으로는 원산지정보 교환을 위한 제도 및 전산망을 재정비해야 함.
 - 대외적으로는 FTA 이행위원회를 통하여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1. 농산물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 제고의 필요성

□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농산물 교역 규모와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14건의 FTA가 발효 중이며, FTA 체결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액은 2004년 1억 2백만 달러에서 2014년 173억 7천 달러로 증가하였음. 농산물 수출액은 동 기간 1백만 달러에서 19억 9천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 정부는 농가 소득과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출전략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음.

- FTA 체결 확대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국내시장 유입이 증가됨으로써 농산물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농산물 수출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각종 수출지원 제도의 도입, 수출유망품목 선정,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대한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음.

□ 한편,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면 수입국의 관세를 절감시켜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어,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음.

- 현재 FTA 체결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전체 농산물 수출의 36.1%를 차지하고 있음.
- 실례로 ASEAN으로의 농산물 수출의 경우, 한·ASEAN FTA 발효 전 연평균 농산물 수출 증가율은 13.9%였으나, FTA 발효 이후에는 25.0%로 증가하였음.
- 또한, 미국으로의 농산물 수출도 한·미 FTA 발효 전의 연평균 농산물 수출 증가율은 7.9%였으나, FTA 발효 이후에는 14.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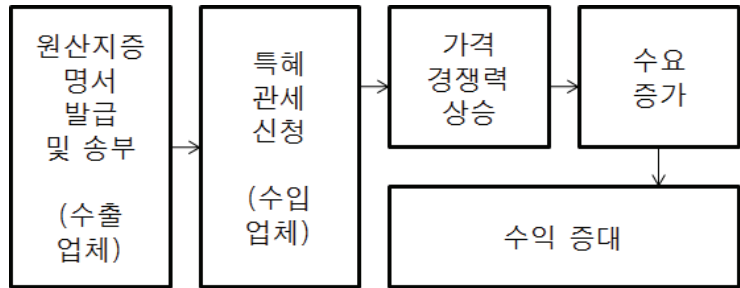
“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특혜관세 활용이
필요

”

“
FTA 특혜관세
제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그림 1. 특혜관세 활용에 따른 수익 증대



□ 그러나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낮은 편임.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의 FTA 활용률이나 국내 농산물 수입에서 FTA 활용률과는 불균형이 큰 상황임.

○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약 23%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63.1%로 비대칭이 큰 상황임(이병훈 외 2014).

– 한·미 FTA에서 농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8.3%이며, 한·ASEAN FTA의 경우에는 3.9% 수준에 불과함.

○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70%에 달하는 등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이 복잡한 일반 제조업 부문에 비해서도 농산물 수출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농산물 수출 시 FTA 특혜관세 활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FTA 특혜관세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 한국산 농산물 수입업체의 FTA 특혜관세 활용실태 조사

2.1. 조사개요

- 본 설문조사는 2015년 이사분기에 실시되었으며, 미국(뉴욕, 로스앤젤레스),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하노이)과 같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이 많은 지역에서 실시되었음.
 - 설문조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소속된 각 해외지사의 도움을 받아 수행되었음.
 - 조사대상은 한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현지 수입업체이며, 조사는 설문지를 통하여 실시되었음.
- 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은 크게 ‘수입 일반사항’, ‘FTA 발효 이후 한국산 농산물 수입 평가’, ‘FTA 특혜관세 인지와 활용’, ‘특혜관세 활용 정도에 따른 애로사항’, ‘FTA 활용 저해 요인 개선 시 수입증대 품목’, ‘한국의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전략’ 등으로 구분되며,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 증대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음.

“
미국과 ASEAN
지역을
설문조사하였음

【 설문 조사 개요 】

- 조사대상: 한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미국, ASEAN 지역의 현지 수입업체
- 유효표본: 미국: 39개, 아세안: 23개
- 조사기간: 2015년 이사분기
-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방문 및 우편 조사
- 설문구성¹⁾: 1) 사업체의 한국산 농산물 수입 일반 현황(11문항)
2) 한국산 수입농산물의 FTA 활용 실태(9문항)
3) 농산물 교역 증대 및 FTA 활용 증대 방안(2문항)

1) 부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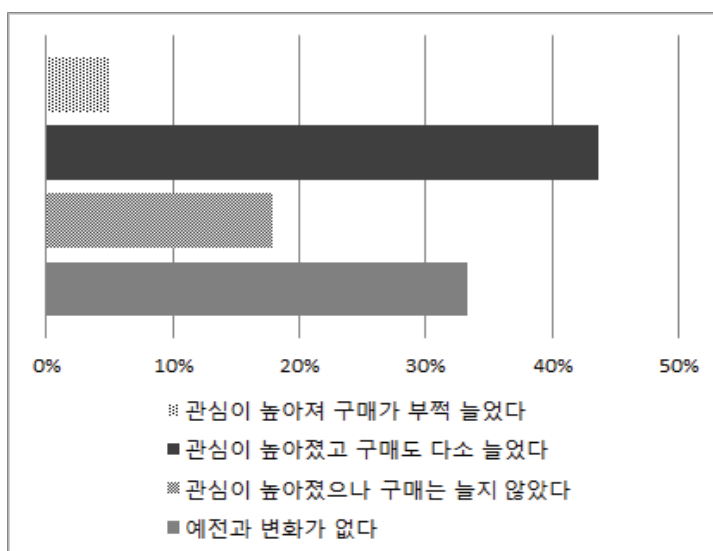
“
한·미 FTA 이후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농산물은
긍정적 반응
”

2.2. 조사 결과

2.2.1. 미국

- 한국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업체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현지시장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수입업체가 평가한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현지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면, 긍정적 평가인 ‘관심이 높아졌고 구매도 다소 늘었다’와 ‘관심이 높아져 구매가 부쩍 늘었다’는 응답이 70%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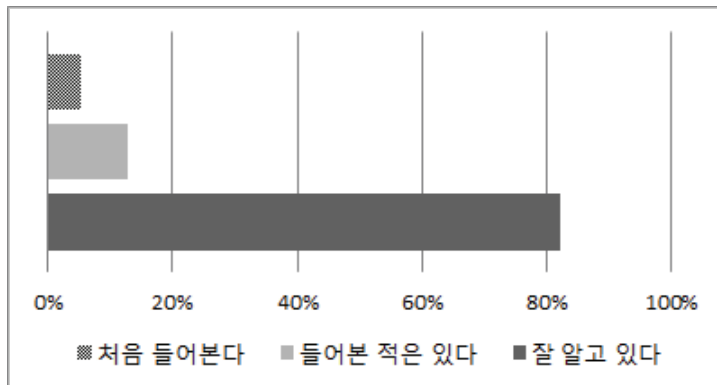
그림 2.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현지시장의 소비자 반응



-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은 한국산 농산물 수입에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또한 특혜관세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현지 수입업체들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특혜관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우리나라의 무역 관련 공공기관과 TV,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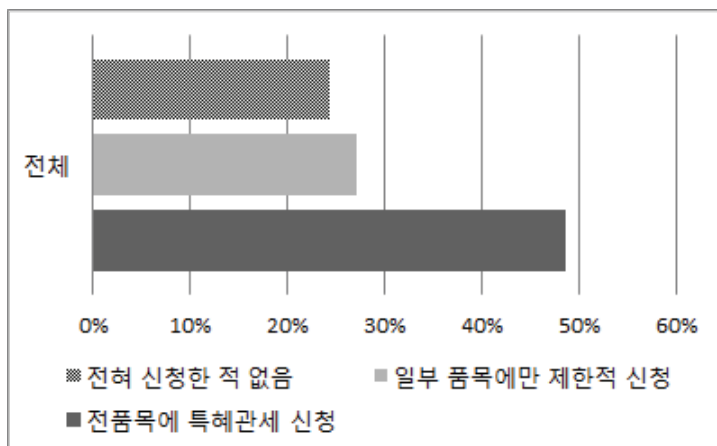
-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지사가 주요 주마다 위치하고 있어 현지 수입업체들이 FTA 특혜관세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음.

그림 3. 한·미 FTA 특혜관세 인지 여부



- 또한 조사 결과, 특혜관세를 신청한 경험이 없는 업체보다 일부 품목에 제한적으로 신청하거나 전 품목에 특혜관세를 신청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아직까지는 특혜관세에 대한 관심이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품목별로도 특혜관세 적용 여부에 차이가 큼.

그림 4. 한국산 농식품 수입 시 한·미 FTA 특혜관세 신청 여부



“

상당수의
현지 업체들은
한·미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고 있음

”

“
원산지 관련 서류
발급과
사후검증 대비에
애로사항이 있음

□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한국 수출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나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거나,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한 우려 등이 지적되고 있음.

○ 한·미 FTA 특혜관세를 신청했으나 일부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신청한 경험이 있는 업체(전체 업체의 27.0%, 신선농산물 취급업체의 42.9%)는 특혜관세를 제한적으로 신청했던 이유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나 증빙서류를 받기 어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음.

– 가공식품의 경우 사용되는 원료가 다양하고 역외 재료 사용 비중이 높은 경우도 있어 원산지 증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다를 경우 최종 생산자의 원산지 확인서를 근거로 수출업체가 증명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 시 어려움이 있음.

– 대기업들의 식품제조 공정 노출 우려와 사후 원산지 검증 대비 등을 이유로 원가계산서(Bill of Material: BOM)나 공정도(Process Flow Chart: PFC) 공개를 꺼리는 문제가 있음.

○ 원재료공급자, 최종생산자 모두 사후검증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입업체 단독으로 사후검증을 대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세관의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작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알려져, 한·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을 철저히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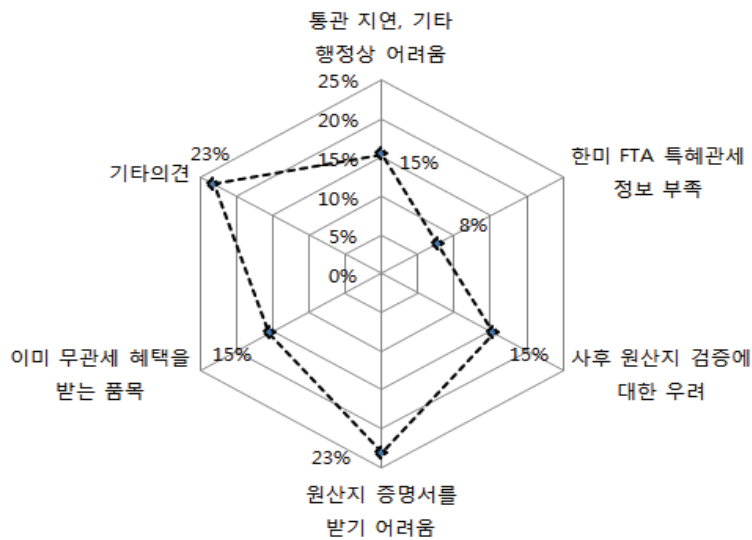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국 현지 통관 전문가는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된 제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것을 언급하며, 국내 업체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CBP Form 28’²⁾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음.

2)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 미국 세관은 서면검증을 위해 정보제공요청서를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심사와 결정을 함. 정보제공요청사항은 수입신고 건의 품목분류, 관세율, 과세가격 평가, 특혜관세 원산지국의 적정성, 기타 신고사항의 관세법규의 준법여부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며 특히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 “Verify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goods”, “under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KR)” 등의 문구에 ‘한·미 FTA 특혜관세 청구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위한 안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출처: 한국무역협회).

-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전체 업체의 24.3%)는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이미 한·미 FTA 이전에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그림 5. 한·미 FTA 특혜관세 활용의 어려움



“

한·ASEAN FTA 이후 우리 농산물에 대한 현지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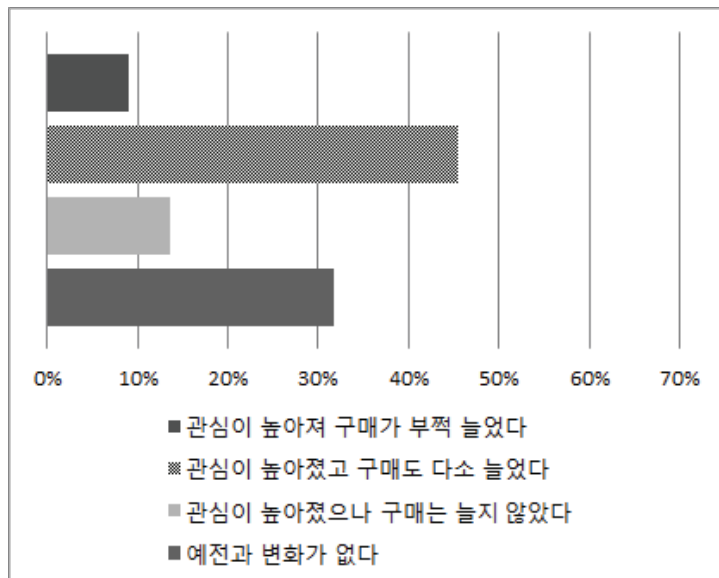
”

2.2.2. ASEAN

- 수입업체들은 대체로 한·ASEAN FTA 이후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현지 관심과 구매가 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수입업체들은 한·ASEAN FTA 발효 이후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현지 소비자 반응에 대해, 대체적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구매 또한 늘었다고 평가하였음.
- 그러나 관심이 높아졌어도 구매가 늘지 않았다는 응답과 예전과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40% 이상임.

“
현지 업체들의
한·ASEAN FTA
활용률이 낮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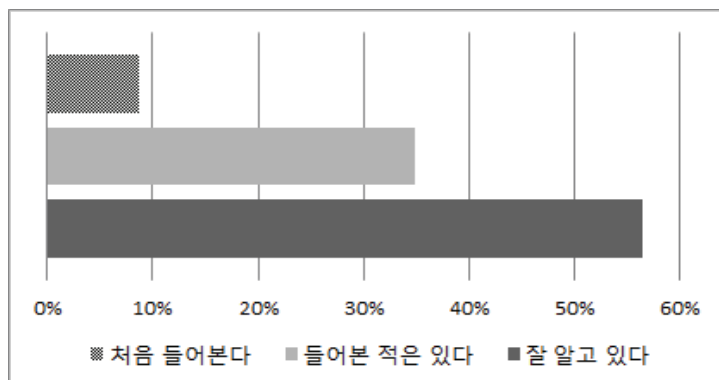
그림 6. 한·ASEAN FTA 발효 이후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현지시장의 소비자 반응



□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은 한·ASEAN FTA 발효에 따라 한국산 농산물 수입 시에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그러나 특혜관세를 신청한 경험이 없는 업체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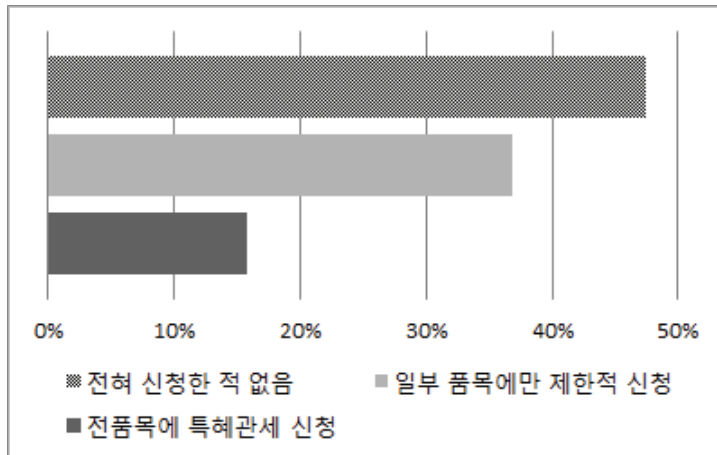
- 조사 결과 한·ASEAN FTA 발효에 따라 특혜관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현지 수입업체에서 인지하고 있었음.
 - 인터넷, 언론, 공공기관, 컨설팅업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FTA 특혜관세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7. 한·ASEAN FTA 특혜관세 인지 여부



- 그러나 한국산 농산물 수입 시 특혜관세 신청에 대한 응답에는 특혜관세를 신청한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와 일부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신청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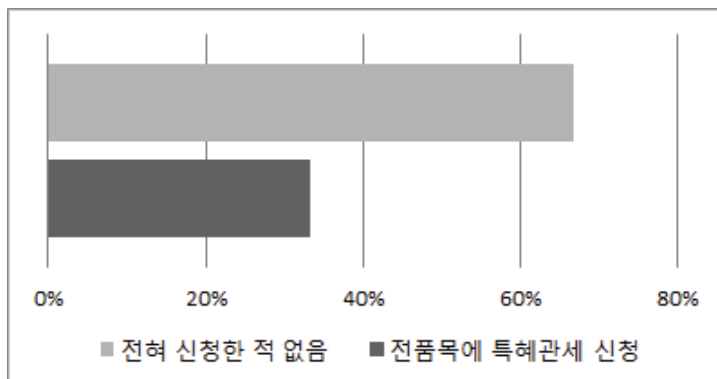
그림 8. 한국산 농식품 수입 시 한·ASEAN FTA 특혜관세 신청 여부



- 신선농산물 취급 업체는 ‘전혀 신청한 적 없음’에 66.7%가량이 응답하였음.

-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이 이미 한·ASEAN FTA 특혜관세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신선농산물 수입 시 특혜관세 신청률이 낮은 이유는, 현지 세관의 투명성 문제, 소량 수입의 문제 등으로 신선농산물의 특혜관세 신청을 위한 비용 대비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임.

그림 9. 한국산 신선농산물 수입 시 한·ASEAN FTA 특혜관세 신청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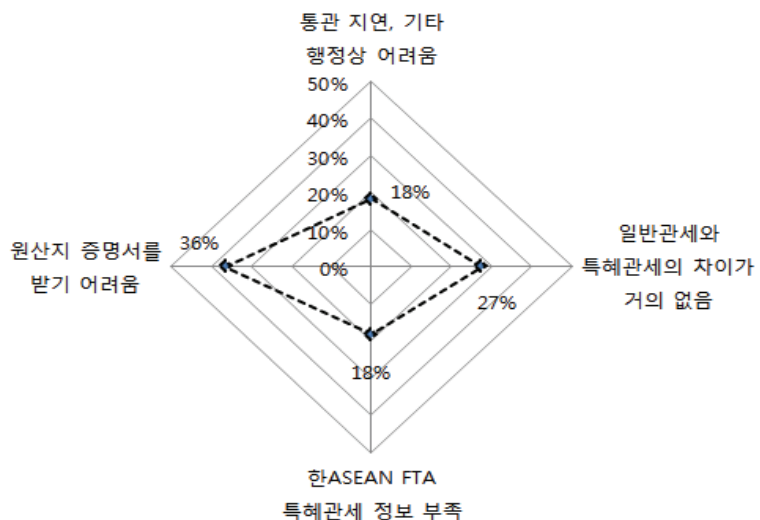
특히,
신선농산물의
특혜관세 신청률이
낮음

”

“
원산지 증명서나
관련 서류 발급에
애로사항이 있음
”

- 전반적으로 수입업체들이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이유는 원산지 증명서나 증빙서류를 받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지 수입업체가 한국산 농산물 수입에서 한·ASEAN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고는 있지만, 일부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원산지 증명서나 증빙서류를 받기 어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밖에 ‘통관 지연이나 기타 행정상의 어려움 및 불이익’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음.

그림 10. 한·ASEAN FTA 특혜관세 활용의 어려움



- 그 밖에도 한·ASEAN FTA 협정문상에 존재하는 ‘상호주의’³⁾ 조항으로 인해 FTA 특혜관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우리나라는 한·ASEAN FTA 개선협상에서 베트남을 비롯한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등과 같은 일부 국가들과 상호주의를 완화하기로 하였지만,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3) 상대국의 시장 개방 정도에 맞추어서 자국의 시장 개방을 결정하려는 입장(출처: 두산백과사전). 가령 예를 들어, 한·ASEAN FTA에서 우리나라는 A 상품을 민감품목으로 설정하였고 상대국은 일반품목으로 관세철폐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해당 상품 수출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반대의 경우도 같음.

필리핀과는 상호주의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 현지 조사 결과 상호주의 적용은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FTA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한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직인색깔, 포장단위 등의 문제로 원산지 증명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한·ASEAN FTA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 발급기관은 회원국의 소관에 따라 발급됨을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ASEAN 일부 국가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발급기관이 다르다며 한국 세관의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직인 색깔 또는 포장단위 등의 문제로 원산지 증명서의 인정이 거부되는 사례가 존재함.
 - 한국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도장의 직인이 대부분 파란색이나 베트남의 경우 도장의 직인이 빨간색인 경우가 많아 세관원에 따라 종종 직인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명서 인정을 거부하고 있음.
 - 포장단위 문제의 경우, 송장(Invoice)상의 포장단위는 낱개로 표기되어 있으나 원산지 증명서에서는 박스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총수량은 같으나 표기단위가 달라 종종 원산지 증명서 인정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세법의 모호한 규정이 많아 같은 물건을 수출해도 담당 세관원마다 해당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세법 규정에 대한 통일된 해석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통관지연을 받거나, FTA 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고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음.
 -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향후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되어 기피하고 있음.

“

ASEAN 지역은
행정상의
비관세 장벽도
존재함

”

“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사항과 현지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인지도에 비해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음

”

3. 시사점

- 미국 현지의 한국산 농산물 수입업체들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설문 응답 업체의 76%가 특혜관세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일부 업체의 경우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또한, 특혜관세를 받더라도 한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할 시 여러 애로사항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ASEAN 지역의 경우도 한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현지 수입업체들이 특혜관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특혜관세 신청 시 여러 제약적 환경으로 인하여 특혜관세를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는 업체와 일부 품목에 제한적으로 신청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지 업체의 경우, 한국 수출업체나 관세율 정보, 제품 정보 등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으며, 현지 통관 시스템의 낙후로 FTA 활용 및 통관에 어려움이 있었음.
- 미국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사후 검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ASEAN의 경우에는 원산지 발급에 대한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세관에서의 통관 지연이나 기타 행정상의 어려움 및 불이익 등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FTA 체결 이후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현지시장의 관심이 높아졌고 구매가 증가했다는 해외 현지시장 조사 결과를 주목해 볼 때, 향후 미국과 ASEAN 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현지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 증대 전략을 수립하고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음.

- 대내적으로는 원산지정보 교환을 위한 제도 및 전산망을 재정비하고 대외적으로는 FTA 이행위원회를 통하여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사후 검증을 위해서는 원재료공급자, 최종생산자, 수출업체 간 원산지정보 교환을 위한 제도 및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수출업체를 위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은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쉽게 정비돼야 함.
 - 현재 FTA 활용 농산물 수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수출지원제도와 수출지원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제도에 대한 정보인식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지원제도의 인식 제고를 통해 FTA 특혜관세 활용까지 연결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어야 함.
- ASEAN 지역에서 행정상의 시스템 부재 및 투명성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아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간 FTA 체결 이후 매년 추진하는 FTA 이행위원회를 통하여 농산물 분야에 적용되는 우리 상품에 대한 양허, 양국 간 상호 인정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련 전산망 개선과
FTA 이행위원회를
통한 비관세 장벽
해소 필요

”

KREI 현안분석 제14호

對미국·對ASEAN 농산물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실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6. 6. 28.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조미형, 한석호,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 상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